

행 정 자 치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육아휴직수당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경기도

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, 과천시, 광명시, 광주시, 김포시, 성남시, 안성시,
용인시, 이천시

내 용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상한액 100만원, 하한액 50만원)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경기도 본청(○○○○○○)과 7개 시·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휴직한 날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77,996,210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.

또한 경기도 본청(○○○○○○)과 3개 시·군에서는 육아휴직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위한 휴직기간 산정 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총 23,849,740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공무원에게 미지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, 과천시장, 광명시장, 광주시장, 김포시장, 성남시장, 안성시장, 용인시장, 이천시장은

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육아휴직수당 77,996,210원([확인서] 에 따른 기관별 해당액)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고, 미지급된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향후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산정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